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39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윤재옥・박충권・서천호

이인선 • 진종오 • 백종헌

권영진 • 박상웅 • 이달희

최수진 · 김태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,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1주간 48시간 또는 52시간,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연구개발직, 과학·학문·예술분야 전문직의 경우 1주 52시간을 최대한도로 하는 현행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어, 근로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제기되고 있음.

해외 사례를 살펴보면, 미국의 경우 연봉 13만 2,964달러 이상의 고소득 사무직에 대하여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(White collar exemption)를 시행하고 있으며, 일본도 연간 수입 1천 75만엔(약 1억 2

천만원)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'고도(高度) 프로페셔널 제도'를 2019년 도입하였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·학문·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·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(안 제63조제4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·학문·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·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3조(적용의 제외) 이 장과 제5	제63조(적용의 제외)		
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			
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	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			
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			
니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		
	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		
	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		
	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・학		
	문・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		
	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		
	시스템 설계·개발업무에 종		
	사하는 사람		
4.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업무에	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		
종사하는 근로자			